

## 美國의 医療過誤實態에 관한 分析 An Analysis on Medical Malpractice Problem in U. S. A.

성북보건소 근무의사

박 재 성

(指導 許 程 教授)

### I. 緒論

일찌기 人類의 歷史上 오늘날과 같이 급격하고도 폭넓은 社會變化와 技術開發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와같은 發展은 特히 医療分野에서 현저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오늘날 医師들은 종래 臨終을 앞둔 患者들을 慰安하기에 바빴던 大部分의 疾病을 손쉽게 고칠 수 있게 되었고 生命을 연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領域도 넓어져 医療 뿐만 아니라 预防하거나 아예 根絕시킬 수 있는 医療技術까지 開發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약적인 医療技術의 發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治療方法을 開發하지 못한 疾病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어 그러한 技術의 開發에도 불구하고 疾病의 治療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副作用이나 危險負担을 완전히 排除하지 못한 점을 알아야 하겠다.

또한 医療技術은 医師 各者の 個別的인 判断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医師에 따라서는 診斷과 治療에 많은 差異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같은 治療節次의 複雜性과 아울러 現代医療에 根源的으로 隨半되는 危險과 不確実性은 드물기는 하지만 部分的인 過誤나 疾病의 悪化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실제로 治療過程中 이와 같은 副作用이나 疾病의 悪化가 發生하면 医療人의 過失有無가 法律的인 問

題로 등장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医療過誤로 法律的인 問題가 發生하는 경우가 점차 增加하는 추세여서 一部에선 이를 새로운 危機로 받아들이려는 傾向이 늘어나고 있다.

歷史的 背景을 살펴보면 美國에서도 1930年代까지는 医療過誤訴訟은一般的 問題가 아니었다. 그 理由로 当時의 医療는 极히 限定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治療에 따르는 副作用도 별도 크지 않았고 副作用이 나타난 경우에도 神의 意思(The Will of God)에 따른 自然스런 結果로 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年代 以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텍사스 및 미네소타州 등에서 医療過誤로 인한 訴訟事件이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한 以來 2次大戰中의 一時的인 減少 傾向을 除外하고는 계속 增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医療患澤을 받게 되었다는 事實에서 由來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現代医療技術의 開發에 따른 危險負担이 늘어나 생겨난 結果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医療過誤 訴訟事件이 增加하게 되는 理由로는 高度化되고 더욱 複雜해진 現代医療를 質的으로 評価할 수 있는 能力を 잃게 된 医療受患者들이 医療行為에 따른 危險負担을 제대로 認識하지 못한다는 점과 現代医療의 特徵이라 할 수 있는 医療의 非人間化에 따라서 患者的 疎外感이 助長된 점과 医療受患者들이 消費者로서의 權利意識을 가지게 됨으로

서 모든 形態의 損害에 대한 賠償請求의 普遍化 傾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傾向에 関心을 갖게된 法曹人の 数도 점차 增加하게 됨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医療에 불만을 가진 患者들에게 손쉽게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와 같은 訴訟事件의 增加傾向에 비추어 美国에선 이미 医療自体는 물론 医療費와 医療事故 責任賠償 保險料와 아울러 法律的인 訴訟体系에 대한 分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現象을 여러 側面에서 実証的으로 나타낼 수 있는 数量的 情報가 흔하지 않은 実情에 비추어 닉슨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特別委員會가組織되고 이 委員會의 報告書가 1973年 1月에 公表되고 듀크大学에서는 医療過誤에 对한 심포지움이 開催되어 1977年에는 医療過誤의 法律的인 側面은 물론 医療의 諸特性과 관련하여 医療過誤를 分析 검토하여 發表한 바 있다.

## 2 医療過誤訴訟의 実態

우선 美国에서 對人 保健奉仕를 提供하고 있는 医師의 数를 살펴보면 1970年 現在 27万 9千名으로 이들은 年間 1人당 3,396명의 患者를 診療하고 있으며 患者는 平均 1年에 4.6回의 診療를 받으며 患者 6.5人中 1名은 病院에 入院하고 있다.

결국 医療過誤問題는 医療受患者와 医療人間의 接觸에서 發生될 수 있는 것으로 美国에선 1970年 1年 동안에 訴訟이 提起된 事件 数는 14,500件이었다.

다시 이 数를 診療件数에 比較해 보면 約 10万 診療件當 1件의 医療過誤 訴訟事件이 發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数值는 外見上 높지 않아서 우연히 드물게 發生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特定形態의 医療行為, 地域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個別의인 医療節次에 따라 有意한 差를 볼 수 있었다. 여기에 医療形態에 따른 医療過誤 訴訟事件의 頻度를 보면 外科診療와 関係를 가진 경우가 57.2%에 달하고 있으나 内科領域에서는 20.5%에 불과해서 手術과 밀접한 関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地域間의 差異를 보면 알라스카州에는 전혀 없는데 反해 네바다州에서는 診療醫師 100名當 14件의 訴訟事件이 發生하고 있어 各 州의 医療狀態는 물론 社會文化的條件에 의해 상당한 影響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医療節次 自體의 危險度에 따라서 差異가 나타나서 整形外科나 麻醉科 專門醫師들에게 특히 訴訟事件이 提起되는 경우가 많다.

病院이 告訴對象으로 된 訴訟을 分析해 보면 全體적으로는 各 病院은 1.9件의 訴訟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7,000個의 全國 病院中 33%에 해당하는 綜合病院에선 訴訟事件이 發生하지 않았고 단지 15

**Percentage of Medical Malpractice Claims Files Closed at Each Stage in the Process and Percentage Closed With and Without Payment**

Stage claim closed	Total	With payment	Without payment
Incident report/pre-claim .....	28.6	7.4	21.2
Claim/pre-suit .....	21.7	7.4	14.3
Suit/pre-trial .....	38.2	24.9	13.3
Trial/pre-verdict .....	5.0	3.5	1.5
Verdict .....	6.5	1.6	4.9
Total .....	100.0%	44.8%	55.2%

Source: Commission Study of Claim Files Closed in 1970.

%에 해당하는 病院에서 総訴訟件数의 ¼ 이상을 占하고 있어 一部病院에 訴訟이 集中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訴訟이 集中되고 있는 一部病院의 医療의 質이 떨어졌다는 證據는 볼 수 없었으며 診療醫師가 行하는 医療의 結果와도 有意한 関係를 発見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発生된 医療過誤訴訟은 約 50% 에서는 最終的인 法的 節次없이 끝냈으며 이처럼 解決된 訴訟事件中 25%만이 實제로 賠償金을 받았다.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訴訟事件은 法的 節次를 밟아 그중 8%는 調停과 妥協에 의해 解結되고 극히一部分만이 裁判節次를 밟았으나 賠償金 없이 끝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 Distribution of Amounts Paid on Medical Malpractice Claims Closed in 1970

Total settlement costs of incidents, in dollars	Percent of incidents	Cumulative percent of incidents
1-499 .....	21.1	21.1
500-999 .....	16.0	37.1
1,000-1,999 .....	12.3	49.4
2,000-2,999 .....	10.1	59.5
3,000-3,999 .....	3.0	62.5
4,000-4,999 .....	2.7	65.2
5,000-9,999 .....	13.4	78.6
10,000-19,999 .....	10.0	88.6
20,000-39,999 .....	5.3	93.9
40,000-59,999 .....	1.3	95.2
60,000-79,999 .....	1.0	96.2
80,000-99,999 .....	0.8	97.0
100,000 and up .....	3.0	100.0
	100.0	

Source: Commission Study of Claim Files  
Closed in 1970.

아직도 많은 医師들은 대부분의 医療過誤 訴訟事件은 根據 없는 患者의 主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지만 實제로 提起된 医療過誤訴訟을 審查한 保険会社의 判定에 따르면 約 46%에서 根據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45%에 해당하는 賠償金 支払実績과 비슷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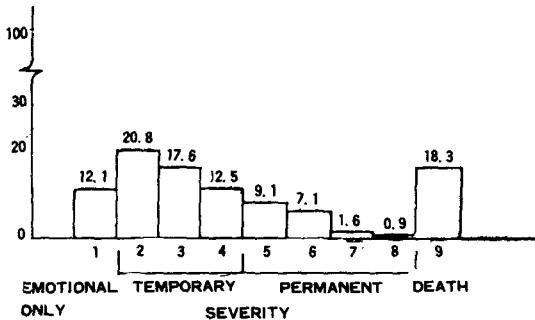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保険会社의 判定은 實제로 賠償金 支給과는 有意한 関係를 나타내지 않아 반드시 医療過誤訴訟의 賠償金 支給이 医療의 質의 内容과 関係가 깊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엔 賠償金 支給 傾向을 살펴보면 4万弗以上支給된 경우는 約 6%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約過半數의 訴訟事件은 3,000弗以上의 賠償金을 받았다. 100万弗以上의 賠償金이 支給된 경우는 訴訟事件 1,000件當 1件의 比率로 나타났으나 이 比率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일단 提起된 訴訟事件이 解決되는데는 상당한 期間이 所要되어 10%에서는 6年半以上이 所要되었고 約 50% 정도만이 18個月以内에 解決되었다.

이와 같은 訴訟의 原因이 된 傷害의 정도와 時위를 보면 各個人에 따라 크게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1970年에 終結된 12,000件의 医療傷害 事件中 19%는 永久 損傷을 남겼고 12%는 心理的인 것이었다. 死亡한 患者를 제외한다면 提起된 損傷의 종는 時的인 경우였다.

#### SEVERITY OF INJURIES ALLEGED IN MEDICAL MALPRACTICE CLAIM FILES CLOSED IN 1970



SOURCE: COMMISSION STUDY OF CLAIM FILES  
CLOSED IN 1970

訴訟을 提起한 患者들은 性別, 年齡別로 보면 58%가 女子였고 53% 정도가 40세 以上이었으나 母集團 人口中 40세 以上은 60을 넘지 못하고 있어 老齡 人口일수록 訴訟의 頻度가 큼을 알 수 있는데 그 理由는 青年層에 比해 医療利用이 많은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다음에는 収入과 관련해서 보면 訴訟提起者의 60%는 전혀 収入이 없었으며 収入이 있는 사람들도 一般母集團 人口의 収入水準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訴訟提起者의 윤곽을 全國 有病人口와 比較해 보건데有意한 差異를 発見할 수 없어 訴訟을 提起하는 階層의 윤곽은 母集團 有病人口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

### 3 医療過誤訴訟의 影響

1966年度에 美国에서 対人 医療奉仕에 대해서 支給된 医療費는 GNP의 6% 이하였으며 1人当 医療費도 212弗 정도였으나 1971年度에는 GNP의 7.4%로 750億弗에 달하여 1人当 858弗을 使用한 것으로 나타나 医療費는 급격하게 增加하여 왔다. 이와

같이 增加하게 된 医療費中 23%를 联邦政府가 負担 해서 政府의 負擔比率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医療費 上昇의 主原因을 들면 인플레가 가장 큰 原因으로 그 比重은 47%를 차지하고 人口의 增加는 그 다음으로 17%의 比重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의 上昇要因 中에서는 실제로 医療過誤訴訟에 관련된 費用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명히 医療過誤 問題는 医療費를 上昇시키는 새로운 要因으로 提起되고 있다. 사실상 1970年에 各種 病院과 医師, 歯科医師, 그리고 関係 保健要員들은 約 2億 내지 3億 5千万弗의 経費를 医療事故責任賠償 保険料로 支払하였다.

물론 이 金額은 같은 해의 総医療費 750億弗에 比하면 적은 数值라 하겠지만 이와 같은 保険料는 自動的으로 患者가 支払하는 医療費에 轉嫁되어 医療費 上昇을 가져오게 한다. 直接 医療事故 責任賠償 保険料만 보더라도 1日 入院에 約 50센트를 保険料 分으로 쓰고 있다. 医療人の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保険料가 医療過誤 訴訟事件의 增加와 함께 계속 늘어나 医療費에 轉嫁되고 있는 傾向이 늘어나고

National Price and Index For Physicians' and Surgeons' Malpractice Insurance, 1960-1972

Year	Physicians (Class 2)			Surgeons (Class 4)		
	Dollar cost	Index (1966 = 100)	Premium as percent of income*	Dollar cost	Index (1966 = 100)	Premium as percent of income**
1960	110.7	71.9	n.a.	229.1	52.3	n.a.
1962	114.9	74.6	0.5	279.1	63.7	n.a.
1964	133.0	86.4	0.5	378.1	86.2	1.2
1966	154.0	100.0	0.6	438.5	100.0	1.2
1968	249.5	162.1	0.8	571.0	130.2	1.4
1970	620.5	403.0	1.8	1,880.9	428.9	4.2
1971	711.5	462.1	n.a.	2,094.0	477.5	n.a.
1972	767.2	498.3	n.a.	2,307.4	526.2	n.a.

\* The income figure used in for self-employed general practitioners, Copyright © 1972 by Medical Economics Company, Oradell, New Jersey 07649.

\*\* The income figure used is for self-employed general surgeons; also from *Medical Economics*.

있다.

1960年과 1970年 사이 10年間의 保險料 变化를 보면 歯科医師의 경우는 115%에 머물렀으나 病院의 경우에는 263%, 그리고 外科医師를 제외한 기타 医師의 경우에는 541%나 올랐고, 外科医師의 경우는 무려 949%나 뛰어 올랐다. 실제로 1960年에 110弗이었던 内科医師의 保險料가 1972年에는 767弗로 뛰어 올라 医療過誤 問題가 經濟的으로 큰 負担을 超來하게 될 可能性을 말해주고 있다. 더우기 医師의 総収入中 保險料가 차치하는 比率을 보면 1962年에 불과 0.5%에 지나지 못했던 것이 1970年에는 1.8%로 늘어나고 外科医療의 경우에는 4.2%로 뛰어올라 医師들에게 새로운 威脅으로 登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医療過誤 問題는 医療費 上昇의 主原因이 될 뿐 아니라 医療 自体에도 심각한 影響을 미친다. 즉 大部分의 開業医나 病院에 從事하는 医師들은 医療過誤로 因한 訴訟을 高상 意識하게 되어 낭비적이며 防禦的인 医療(Defensive Medicine)를 提供하기 쉽다.

이와 같은 防禦的 医療의 적극적인 面을 보면 통상 医学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診斷을 위한 檢查나 治療節次를 採択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部分的이지만 過剩診療의 傾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되는 意見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극적인 側面을 보면 통상적으로 医学上 필요한 節次라 하더라도 추후에 患者로부터 医療過誤 訴訟이 提起될까봐 留保하거나 實시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다른 側面을 보면 特定 診療法이나 診斷節次의 副作用에 대한 구체적 資料를 公表하지 않으려는 傾向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이 增加된다면 사람의 生体実驗에 따른 危險이나 副作用에 對한 畏懼이 힘들게 되고 医學發展 自体에도 影響을 줄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 들도 있다.

이와 같은 防禦的 医療는 一部 患者들에게 医療供給量을 增加시킨다거나 入院期間을 延長시키게 되는 過剩医療 事態를 超來시켜 医療費 增加를 부채질한다.

또한 医療過誤 問題는 救急診療에도 상당한 影響

을 주고 있다. 즉 不幸한 応急事態가 發生했을 경우에 医療過誤로 告訴를 받게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救急診療를 忌避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忌避現象이 医療過誤 訴訟이 對한 医師의 恐怖心외에도 医療費 支払問題와도 関聯되어 있다. 따라서 一部 州에서는 医療施設이 不充分한 環境에서 不可避하게 提供된 医療人의 医療에 對해서는 免責 特權을 부여하는 法案이 通過된 바 있고 또한 그런 免責規定의 制定을 촉구하는 傾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医療過誤 問題로 医療關係 補助要員의 活用마저 忌避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補助要員의 行為로 생겨난 医療過誤에 對해서도 医師가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医師들을 補助要員을 活用할 때 생기는 여러 利得에 對해 잘 알고 있다. 즉 必要不可缺한 医療 業務에만 專心할 수 있어 時間을 節約할 수 있고 보다 많은 患者를 診療할 수 있어 全體의 不足을 막을 수 있으며 그 만큼 医療費도 節減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問題가 되는 것은 有資格者를 活用하는 경우가 아니라 無資格者를 活用할 때 많은 医療過誤訴訟이 提起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医療過誤 訴訟이 增加되면서 종래 진밀했던 医師와 患者 間의 関係에도 심각한 問題가 露出되고 있다.

患者는 医師를 不信하게 되고 더우기 医師는自身的 診療로 생겨날 수 있는 医療過誤를 回避하기 위해 不必要한 節次를 利用한다거나 아니면 꼭 necessary한 節次를 避하는 경우가 생겨나 그 関係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報道媒体는 대개 医療過誤 問題의 影響을 拡大시키는 役割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消費者 権利의 意識構造와 弱者の 保護란 報道media의 基本精神에서 訴訟을 提起한 患者的 立場만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医療過誤 訴訟을 增加시키고 医療費 上昇으로 연결되어 이로 말미암아 患者에게 더 큰 負擔만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 結論

최근 医療技術의 高度한 發展에도 불구하고 医療過誤 問題는 더욱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增加하는 理由로는 医療節次의 複雜性, 医療의 非人間化로 因한 患者의 距外感, 医療受患者의 意識構造 變化로 나타난 自身이 입은 損害에 對한 賠償請求의 普遍化 傾向 및 報道媒體의 影響 等을 들 수 있다. 特히 이와 같은 医療過誤 問題는 地理, 医療形態, 個別的인 医療節次 等에 有의한 差를 보였다.

결국 医療過誤 問題로 因한 訴訟의 提起가 많아지면서 医療費의 上昇을 誘發하였고 医療가 防禦的인 医療로 變化되어 過剩診療 問題를 불러 일으켰고 医療過誤 問題가 發生하기 쉬운 救急診療를 忌避하는 傾向을 超來하게 되었다. 또한 医療關係 補助要員의 活用마저 두려워하게 되면서 더욱 医師의 時間을 節約할 수 없게 되어 非效率的인 医療提供 体系를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医療過誤 訴訟을 提起한 경우에 그 解決에 要하는 期間이 너무 길고 提起한 患者의 再活을 為한 綜合的인 方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그

賠償金을 算出하는 系統的인 制度가 미비된 점 等이 큰 問題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医療過誤 問題의 是正策으로 여러가지 代案이 提示되고 있다. 그 중 提示된 代案을 보면 우선 첫째로 医療水準 確立作業이 先行되고 裁判에서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鑑定 制度의 採択이 提示된 바 있다.

民事 및 刑事訴訟에서 適正한 正學的 判断을 裁判에 反映한다는 것은 裁判의 質的 水準 向上을 위해 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 参考文獻

- (1) 日本医師会：日本医師会 医師賠償 責任保険の 解説，1973。
- (2) Duke Law Journal : Medical Malpractice; The Duke Law Journal Symposium, Ballinger Publishing Co., Cambridge, Massachusetts, 1977.
- (3)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Medical Malpractice; Report of the Secretary's Commission on Medical Malpractice, DHEW Publication, No. 73-88, 1973.